

동 안내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후속조치인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. 동 안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 
**과태료 부과 업무 시, 당시 행정명령 발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**하시기 바랍니다.

##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

- 제5판 -

2022. 5. 2.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### 【주요 개정사항】

목차	구분	주요 개정사항
II.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	개정	<b>II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</b> <b>① 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</b> ○ (마스크 착용 의무) - 실내* 전체 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-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(참석자),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·스포츠경기(관람객) -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,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
	신설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&gt;</u></p> ① 발열,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*인 경우 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*을 이용하거나,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* 스포츠 등 경기(관람)장(50인 미만)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체육시설(겨울 스포츠시설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 시설(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)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-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(15분 이상 등)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- 함성·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## 목 차

I. 개요	4
1. 추진 배경	4
2. 법적 근거	4
3. 행정명령 관련	5
4. 참고 및 유의사항	5
II.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	7
1.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	7
2. 과태료 금액	9
3.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	11
III. 지도 점검 및 단속 절차	12
1. 지도 점검 및 단속	12
2.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	12
IV. 협조사항	16
▷ 붙임 ◁	
1.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	17
2. 과태료 부과 관련 FAQ	19
3.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: 마스크 착용	36
4.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	38
5.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	39

## I 개요

### ① 추진 배경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감염병예방법, 이하 “법”으로 기재)」 개정(‘20.8.12 개정, 10.13 시행)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

### ② 법적 근거

- 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2호의4

####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
-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,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2. (생략)
-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## 행정기관 참고용

- 법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 (개정 '20.8.12, 시행 '20.10.13)

### 감염병예방법 제83조(과태료)

- ① (생략)
-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③ (생략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,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 3] 행정명령 관련

- (행정명령권자)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#### [참고] 감염병예방법 상위 조항의 “시·도지사” 등 약칭
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 (①~②항 생략)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... (이하생략)

- (과태료부과권자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- (행정명령기간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 “경계”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### 4] 참고 및 유의사항

-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~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
    - (관리자) 장소·시설의 관리·총괄 책임자
    - (운영자) 장소·시설 설치자 또는 사업자
    - (이용자) 해당 장소·시설, 운송수단, 지역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\*
- \* 관리자·운영자, 종사자 등을 포함

## 행정기관 참고용

- “마스크 착용 의무” 행정명령 시 명확한 근거법령 명시 필요
  - 특정 장소·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로, 운송수단(대중교통)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방역지침의 일환임을 명시하여 발령 필요
  -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는 경우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로 발령 필요

## II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

### 1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

#### 1 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

##### ○ (마스크 착용 의무)

###### - 실내\* 전체

\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###### -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(참석자),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·스포츠경기(관람객)

-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,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

##### ○ (관리 의무)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

\*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

#### <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>

① 발열,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

② 코로나19 고위험군\*인 경우

\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

③ 실외 다중이용시설\*을 이용하거나,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

\* 스포츠 등 경기(관람)장(50인 미만)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체육시설(겨울 스포츠시설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(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)

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
-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(15분 이상 등)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
- 합성·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
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### 2 마스크 종류

○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'의약외품'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

- '의약외품'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

\* 단, '의약외품'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\*\* 식약처 권고사항('20.8.28일):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,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(숨을 내쉴 때(날숨)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)

○ '의약외품'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\*도 가능 함

\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
- 단,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### 3 착용법 관련

○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
-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○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

2 과태료 금액

1 대상별 과태료 금액

○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○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\* 부과(법 제83조제2항)

\* 1차 위반 50만원, 2차 위반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원

※ <참고>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 기준

2 상황별 과태료 부과(예시) \* 1차 위반 시 예시

순번	위반 내용	행정명령	운영자 (또는 관리자)	이용자	시설예시
1	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·관리 소홀	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(제2호의2)	과태료 50만원	과태료 10만원	카페
2	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·관리 적합	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(제2호의2)	과태료 부과 없음	과태료 10만원	PC방
3	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	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 명령(제2호의3)	-	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	대중 교통

<참고>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해석례(법무부, '21.2월)

○ (질의) 음식점 등의 관리자가 식품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,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바, 이 때 당사자에게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수

○ (해석)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관리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,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, 「식품위생법」이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식품의 제조·가공·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,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,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

- 따라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식품위생법」은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다르고,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은 그 위반 행위의 태양 역시 상이하므로, 사안은 당사자가 법적근거가 다른 두 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질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근거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3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

○ 법 시행령 [별표3]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

○ 또한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

③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○ 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)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
-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  - \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-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-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○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 세면, 음식 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

-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
-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-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어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-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-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Ⅲ 지도 점검 및 단속 절차

① 지도 점검 및 단속 ※ 각 장소·시설별 담당자가 지도·점검 및 단속 실시

○ (지도·점검)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·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시설에 대해 지도·점검 실시

○ (단속)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- 단, 현장 단속 외,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(장소)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

\* 위반행위 적발 → 단속자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(요청)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 이내)

\*\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②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

① 위반행위 적발

-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장소·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,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

②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

-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안내
- 단속 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

③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,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사전통지서 추후 발송)

-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, 인적사항(이름, 주민등록번호) 확인
-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하며,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경우 **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**(112 신고)
  - \* 지역 내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
-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 (10일 이상)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/100 범위에서 감경됨을 안내

**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<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포함 사항 >

**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**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2.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
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4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
5.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6.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7.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<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후속조치 >

1. 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
2.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함
3.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
4.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④ 과태료 부과 통지

-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**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**
-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
-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,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

※ 처분통지서의 수령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(<http://epost.go.kr>)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

-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\*

\*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, 공시송달기간 (14일)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
<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포함 사항 >

제4조(과태료 부과 고지서)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2. 과태료 부과에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
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4. 과태료 납부 기한,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
5.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
  - 가.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
  - 나.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  - 다.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
  - 라.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(監置)
  - 마.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
6.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관과 방법
7.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<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항 >

제2조의2(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5. 10., 2018. 12. 31.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  2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
 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  5. 미성년자
-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.

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후속조치

-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
  - ※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 상실
-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,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
-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,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
  - ※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

IV

협조사항

- (협조사항)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 ①근거법령, ②장소·시설 대상, ③마스크의 종류, ④착용법, ⑤시행일을 포함하여 행정명령 재발령 필요



**붙임 1**    **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**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2. 2. 9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  - 1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3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·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 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 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아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2항	50	100	200
자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제4항제1호	10	10	
차.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4항제2호	10	10	

붙임 2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

※ 다음 FAQ는 동 안내서 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(대상 장소, 마스크 종류, 착용법,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등)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, 지자체별 행정 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1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

Q1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
-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,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장소·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
-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감염병 위기 “경계”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·시설,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

Q2.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?

-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·시설·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- 실내 전체
  -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(참석자),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·스포츠경기(관람객)
  - \* 집회와 공연·스포츠경기 관람의 경우 합성·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
-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장소·시설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,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

Q3.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?

-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  - 예를 들면, 천장·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, 천장·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
  - 참고로,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

Q4.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?

- 실외에서는 50인 이상이 참석(관람)하는 집회·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
  - 여기서 집회란,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, 시위를 의미하며, 참가 (예정)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
  - 공연이란, 「공연법」 제2조에 따른 공연을 의미하며 50명 이상 관람이 가능한 경우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
  - 스포츠경기란 운동선수\* 의 시합·경기\*\*를 의미하며, 50명 이상 관람이 가능한 경우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
  - \*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(생활체육 포함)
  - \*\*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

## 행정기관 참고용

Q5.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,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
- 24개월 미만의 영유아,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,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
  - ※ 단,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,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·감독이 필요
- 또한, 과태료 부과·징수를 규정하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**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**

Q6.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?

-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
  - 만약,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

Q7.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?  
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?

-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  - 다만,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
-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·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(법 제83조제2항)
  - \* 1차 위반 시 50만원, 2차 위반 시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

## 행정기관 참고용

Q8. 실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,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?

-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(이용자)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,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
- 다만, 관리자·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(법 제83조제2항)
  - \* 1차 위반 시 50만원, 2차 위반 시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

Q9. 마스크는 보건용, 수술용,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?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?

-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(KF-94, KF-80 등), 비말차단용(KF-AD),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'의약외품'으로 허가된 마스크(밸브형 마스크 제외) 착용을 권고함
  -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'보건용 마스크'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,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
  - 다만, '의약외품'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\* 등의 착용도 가능함
    - \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-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, 스카프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

## 행정기관 참고용

### Q10. 전자식 마스크를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?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식마스크 예비안전기준 공고(제2021 - 0313호)에 따른 공급자적합성을 확인하여 KC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
  - 단, 이용자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하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해야 함
  - 부합 여부는 'KC 마크' 표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

### Q11. 넥워머, 바라클라바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?

-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**과태료 부과 대상임.**
  - 다만, 방한 등을 목적으로 착용 시에는 마스크 위에 착용하기 바람

### Q12.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?

-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,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**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**
  - \*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

## 행정기관 참고용

### Q13.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,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?

-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  -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,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 할 것을 권고함

### Q14. 마스크 가드 등 마스크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
- 마스크 액세서리 착용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달라지지 않음
  -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**마스크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**
    - \* 한국소비자원 권고사항('21.12.30.) :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·천·휴지 등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미세먼지바이러스 등의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되도록 사용을 자제

### Q15.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?

-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
  - 다만, **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** 집 안에 고위험군(60세 이상, 기저질환자 등)과 같이 있으면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, 특히 고위험군과의 대화·식사 등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함

## 행정기관 참고용

Q16.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
-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, 주문할 때,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, 음식 섭취 후, 계산할 때, 퇴장할 때 등 **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**해야 함
- 또한, **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**해야 함

Q17.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,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?

-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, **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**
  - \*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
- 단, 밀폐된 흡연실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장소 이용하기, **흡연 시는 거리 유지, 대화 자제, 이용 후 손 소독 등 「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」에서 권고하는 방역수칙 준수**

Q18. 실내 수영장, 목욕탕,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
- 수영장에서는 **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**해야 함
- 목욕탕 및 사우나 **이용자**의 경우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**마스크 착용 과태료 예외 상황**이나 **탕 안, 발한실, 샤워실 외에는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**를 권고함
- 다만, **세신사의 경우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**해야 함
- 대화,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,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, 사람 간 **최소 1m** 거리두기, 활동 전·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

## 행정기관 참고용

Q19.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,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,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?

-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**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할 것을 권장**함
-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**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**해야 함
-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**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**함

Q20. 결혼식장에서도 하객, 신랑,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
-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**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**해야 함
- 다만, 신랑·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**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** (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(“20.9.10.) 참조)

Q21. TV 등 방송출연자,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?

- **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,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**임
- 방송 출연은 방송법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(지상파, 케이블, IPTV 등)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,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
- \*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
- 또한 **방송국 스태프,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**해야 함

## 행정기관 참고용

Q22. 광고 모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예외가 가능한가요?
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
- 다만, 정해진 무대(촬영 스튜디오 등)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함

Q23. 사진 촬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?

- 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
-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예외임
- 또한,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,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할 때, 촬영 당사자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
- \* 단, 돌잔치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
- 다만,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함

Q24.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언어 교육을 위해서 수어용 투명 마스크(일명 립뷰 마스크)를 착용할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?

-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수어용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'의약외품'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
- 다만, 의사소통 등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'의약외품'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

## 행정기관 참고용

Q25.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회 경기를 하는 경우도 운동 경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되나요?

- 실내에서는 운동선수가 시합·경기를 할 때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하나, 동호회에서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경기하는 경우는 운동선수가 시합·경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- 이때, 운동선수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(생활체육 포함), 시합·경기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함
- \* 다만, 심판 등이 경기장 내에서 시합·경기에 참여하며, 시합·경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운동선수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
- 단, 실외에서 운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며,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

Q26. 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?

-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
- 항공기 조종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경우,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 종사자가 방진마스크 등 작업 시 규정된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됨
- 단, 위의 경우라도 업무 수행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'의약외품' 마스크 등 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

## 행정기관 참고용

Q27. 실내에서 가림막(칸막이)을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?

- 실내에서 가림막(칸막이)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 
- 가림막(칸막이)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

Q28.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활동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-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불가능한 활동은,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
- 관악기 연주 전·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, 대화자제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람

Q29. 지하철 실외 승강장에서 대기 및 승차 시에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?

- 지하철 승강장은 실내 지하철은 실내로 간주되며, **실내 마스크 의무가 적용됨**
- 단, **실외 승강장**의 경우, **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** 지하철에 승차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마스크 착용을 **권고함**

Q30. 50인 이상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, 공연장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줄을 설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?

-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실외, 야외에서 밀집해서 줄을 서는 과정에서, 1m 이상 거리의 지속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**권고함**

## 행정기관 참고용

Q31.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집회 등은 아니라도 다수의 인원이 특정 공간에 모이는데 이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은?

-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야외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**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음**
- 다만, 밀집된 환경에서 1m 이내의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**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**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을 **권고함**

Q1.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?

- 감염병예방법 제83조(과태료)에 따라 **질병관리청장,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음**
-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

Q2.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?

-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, **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**
- 단, 현장 단속 외,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(장소)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

Q3.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질서위반행위규제법\*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- \* 위반행위 적발 → 단속자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(요청)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이내)
- \*\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Q4.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?

- 영국·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
- \* (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) 영국 200파운드(약 30만원), 프랑스 135유로(약 18만원),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(약 53만원), 독일 최소 50유로(약 7만원)



3 지도·단속 관련 [단속기관 참고용]

Q1.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(민간인)이 과태료 단속 할 수 있나요?

- 과태료 부과 지도·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,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마땅함

Q2. 단속 시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
  -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폭행·협박 등 단속 방해 시 신속히 경찰관이 출동 할 수 있도록(112 신고) 사전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함

Q3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(일명 마스크 파파라치)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

-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,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,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  - 신고 또는 제보 창구 운영 여부는 향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속 주체인 지자체장이 판단 할 수 있을 것임

4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(22.5.2. 시행) 관련

Q1.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(5.2. 시행)를 결정한 이유는?

-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
  -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  -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을 보임
  -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는 고위험군, 위험 상황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
    - \*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(싱가포르)하거나, 더 높은 수준(뉴질랜드, 프랑스)이었으며,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

Q2.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의 의미는?

-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님
  - 다만,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조건으로 조정된 것임
- 기존에도 2m 거리 유지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었지만,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오던 불편함이 상당부분 존재함. 이를 고려하여 현실화
-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며, 특히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함
- 아울러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

Q3.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 
되나요?

- 실외 산책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님
- 다만, 실외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

**<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>**

- ① 발열,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\*인 경우
  - \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
-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\*을 이용하거나,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
  - \* 스포츠 등 경기(관람)장(50인 미만)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체육시설(겨울 스포츠시설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(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)
-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  -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(15분 이상 등)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  - 함성·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

**붙임 3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: 마스크 착용**

**2 마스크 착용**

**< 개인방역 보조수칙 : 마스크 착용 >**

**①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**

- 마스크 착용, 손 씻기,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.
-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'의약외품'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.
  - '의약외품 마스크'가 없을 경우 면(천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**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**

-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.
-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.
-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,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
-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. 만졌다면,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.
-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,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·밀집·밀접(3밀)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.
  -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-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, 어지러움,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.
-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.

**③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**

**<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>**

-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.
-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(참석자),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·스포츠경기(관람객)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.

- 이외에도, 아래와 같은 실외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.
  - ① 발열·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
  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\*인 경우
    - \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
  -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\*을 이용하거나,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
    - \* 스포츠 등 경기(관람)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체육시설(겨울 스포츠시설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(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)
  -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    -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(15분 이상 등)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    - 함성·합창 등 비밀 생성이 많은 경우
-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또는 감염 위험시설(3말)·취약시설(요양병원 등)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.

**<상황별 권고 마스크>**

상황	보건용 마스크		수술용 마스크	비말차단용 마스크
	KF 94	KF 80		
의료 관련 상황	필수		-	-
생활 방역 상황	·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·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· 건강취약계층, 기저질환자*		(우선) 권장	사용 가능
	· 3밀시설(밀집·밀접·밀폐) 또는 감염취약시설(요양병원 등) 방문		(우선) 권장	사용 가능
	·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·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· 실외에서 최소 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		권장	

\* 심혈관질환, 당뇨, 만성 폐질환, 암, 뇌혈관질환, 면역저하, 비만, 천식 등

**4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**

- 집·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,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
  - ※ 가정에서 60세 이상, 기저질환자,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,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
-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
- 음식 섭취, 수영·목욕, 세수·양치, 걷기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

**5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상황**

- ① 24개월 미만의 영유아, ②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, ③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
  - ※ 단,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,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·보호자의 세심한 관찰·감독이 필요
  - ※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” 참조

**붙임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(22.5월)**

**<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>**

- 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
  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  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경계·심각”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  - (과태료 부과) 계도기간 1개월(20.10.13.~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
    - 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    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이상 200만원)
-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
  - (착용 의무) 실내 전체 및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(참석자),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·스포츠경기(관람객) 시 마스크 착용
    - \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축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    - (관리 의무)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
-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
  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, 그 외 천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 가능
    - \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    - ※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파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  - 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    - \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-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

예외 대상	예외 상황
·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·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·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	
	·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·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·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·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·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· 걷기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·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	·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여통역을 할 때 ·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·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·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 ·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붙임 5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(식약처)



- KF94 마스크** ·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
  - KF80이상 마스크**
    - 기침,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    - 건강취약계층<sup>①</sup>과 기저질환자<sup>②</sup>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  - 비말차단용·수술용 마스크**
    -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·더운 여름철·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
- ① 건강취약계층 노인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  
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, 당뇨, 만성 신질환, 만성 간질환, 만성 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

미세입자 차단

호흡 용이성



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



입과 코를 가리고, 틈이 없도록 착용



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 
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



-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·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
-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



마스크 폐기법



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

\*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